

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3 . 30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. 4.26.
- 다. 상 정 일 자 : 1999. 4.26 제6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반사항을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전산화 위주의 기존 조례를 종합적 지역정보화 추진에 적합토록 통합, 개편하기 위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(제3조)

-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-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
-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
-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·시행

나.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(제4조)

- 군수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
-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,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

다.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(제7조)

-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 운영

라.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(제8조)

-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설치

마.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기능(제9조)

-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-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바.구성(제10조)

-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로 구성

4. 검토결과

- 정보화촉진기본법,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, 지방자치법등을 근거로 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전산화 위주의 기존 조례를 종합적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적합토록 통합·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준칙에 따른 조례제정으로서 타법에 저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
- 기타 자구등에도 별문제점이 없음